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43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박해철 · 최민희 · 강준현
박지원 · 정진욱 · 이광희
정준호 · 김 현 · 문금주
임호선 · 이춘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방재기상”이란 기상현상과 직접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기상재난”이라 한다)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생산·제공 및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기상재난 방지를”을 “방재기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을 “방재기상을 위한”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상청장은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방재기상에 이용·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방재기상에 이용·활용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의4(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